

제 2 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자동이체제도 이용 등

- 자동이체제도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①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할 때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②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납입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④ 이 자동이체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해당일 30일전까지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이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5 조 담보제공

- ① 본인은 본 건 담보주택에 은행 또는 공사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이전행위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 또는 공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 주택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은 은행(공사)을 위하여 질권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인

- ① 본인은 대출상당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도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 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별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공사)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공사)이 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공사)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 ①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제6조 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 8 조 소유권 이전할 때 대출금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 ①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액의 전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전항의 양수인이 채무인수 시에는 양수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거나 채무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대출자격 상실자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

이 약정 제7조에 해당하더라도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기로 합니다.

-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 -

제 10 조 채권의 양도·신탁 및 피담보채권

본인은 공사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 건 대출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공사로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의합니다.

- ① 본인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공사가 이를 신탁함에 승낙하며,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공사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실제로 공사로 양도되는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은 위 1호의 양도 및 신탁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본 건 근저당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0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행정전산망 이용 동의 특약 -

제 11 조 무주택증명·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1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토지 후취담보에 관한 특약 -

제 12 조 토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본 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 미등기 사유가 없어 저본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은행 또는 공사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곧 이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2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결혼예정자에 관한 특약 -

제 13 조 결혼사실 증명

본인은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본 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로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3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유한책임대출에 관한 특약 -

제 14 조 유한책임대출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은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한책임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유한책임이 아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혼용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위 특약사항 제14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제 15 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변경금리)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3.0%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부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일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일로부터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및 조건변경 제한과 최종 적격 확정시 금리 적용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제 16 조 자산기준 초과 시 대출계약의 철회

제15조에 따라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기본약관 제 4조의2를 적용합니다.

- 기타 특약사항 -

본인 인 또는 서명 자필확인 인

- 고액 고지 사항 -

-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상당 및 신청서' 및 본 약정서 제6조에 진술한 소득, 주택보유수 또는 임대차 현황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세대별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본 건 대출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제7조의 거래조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제16조 및 은행혁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여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또는 서명 자필확인 인

본인 및 자서확인

소속 인 직위 인 성명 인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신한은행(이하 “은행” 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포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제 1 조 금리우대 적용

“은행”은 본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해당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기본 또는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 중 선택)

기본

구분	금리우대 항목	
기본 금리우대 (택 1)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신혼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p	
	<input type="checkbox"/>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p	
	<input type="checkbox"/> () %p	
* 대출기간 중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일 당일부터 적용		
추가 금리우대 ※ 중복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p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p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한시적 적용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2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1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신규 분양주택 가구 () %p		
<input type="checkbox"/> () %p		

주택보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

구분	구입자금	
추가 금리우대 ※ 중복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p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p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한시적 적용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2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1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신규 분양주택 가구 () %p		
<input type="checkbox"/> () %p		

제 2 조 금리우대 종료

제1조의 금리우대 항목 중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금리우대 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우대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	----	---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제 2 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자동이체제도 이용 등

- 자동이체제도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①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할 때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②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납입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④ 이 자동이체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해당일 30일전까지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5 조 담보제공

-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에 은행 또는 공사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이전행위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 또는 공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 주택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은 은행(공사)을 위하여 질권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인

- ① 본인은 대출상당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도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원명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공사)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공사)이 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공사)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 ①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제6조 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 8 조 소유권 이전할 때 대출금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 ①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액의 전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전항의 양수인이 채무인수 시에는 양수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거나 채무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대출자격 상실자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

이 약정 제7조에 해당하더라도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기로 합니다.

-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 -

제 10 조 채권의 양도·신탁 및 피담보채권

본인은 공사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건 대출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공사로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의합니다.

- ① 본인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공사가 이를 신탁함을 승낙하며,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공사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실제로 공사로 양도되는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은 위 1호의 양도 및 신탁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0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행정전산망 이용 동의 특약 -

제 11 조 무주택증명·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1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토지 후취담보에 관한 특약 -

제 12 조 토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본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 미등기 사유가 없어져 본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은행 또는 공사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곧 이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2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결혼예정자에 관한 특약 -

제 13 조 결혼사실 증명

본인은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본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로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3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 유한책임대출에 관한 특약 -

제 14 조 유한책임대출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은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한책임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유한책임이 아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혼용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위 특약사항 제14조에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제 15 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변경금리)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3.0%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부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일로부터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및 조건변경 제한과 최종 적격 확정시 금리 적용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

본인 인 또는 서명

제 16 조 자산기준 초과 시 대출계약의 철회

제15조에 따라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와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기본약관 제 4조의2를 적용합니다.

- 기타 특약사항 -

본인 인 또는 서명 자필확인 인

- 고액 고지 사항 -

-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상당 및 신청서' 및 본 약정서 제6조에 진술한 소득, 주택보유수 또는 임대차 현황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세대원명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본건 대출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제7조의 거래조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제16조 및 은행혁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여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또는 서명 자필확인 인

본인 및 자서확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	----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신한은행(이하 “은행” 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대출거래약정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포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제 1 조 금리우대 적용

“은행”은 본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해당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기본 또는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 중 선택)

기본

구분	금리우대 항목	
기본 금리우대 (택 1)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신혼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p	
	<input type="checkbox"/>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p	
	<input type="checkbox"/> () %p	
* 대출기간 중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일 당일부터 적용		
추가 금리우대 ※ 중복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p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p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한시적 적용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2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1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신규 분양주택 가구 () %p		
<input type="checkbox"/> () %p		

주택보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

구분	구입자금	
추가 금리우대 ※ 중복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p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p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한시적 적용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2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1자녀가구 () %p <input type="checkbox"/> 신규 분양주택 가구 () %p		
<input type="checkbox"/> () %p		

제 2 조 금리우대 종료

제1조의 금리우대 항목 중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금리우대 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우대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	----	---